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521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8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3. 10. 3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5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원신

별지